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270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8월 11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공연예술 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
- 나. 이에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1) 사 무 명 :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
- 2) 추진근거
 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 -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- 3) 필 요 성 :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
- 4) 사무내용
 - 음악연주활동

- 음악·공연 교육사업 및 조사·연구
- 연주자 육성사업
- 공연예술시설의 관리·운영
- 국내·외 공연예술단체와의 교류·협력
-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위탁하는 사업
-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

나.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기관 개요

- 1)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
- 2) 규 모 : 건물 2,043.58 m^2
- 3) 소요예산 : 20,220백만원

※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문화정책과 문화협력팀 이지나 (☎ 2133-2519)